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 - 10명
2. 총무재무위원회 - 9명
3. 시민보건위원회 - 9명
4. 도시건설위원회 - 1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영위원회 - 9명 2. 총무재무위원회 - 10명 3. 시민보건위원회 - 10명 4. 도시건설위원회 - 10명 	<p><u>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운영위원회 - 10명 2. 총무재무위원회 - 9명 3. 시민보건위원회 - 9명 4. 도시건설위원회 - 12명

결산검사위원회선임(안)

○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 '91회 제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-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

○ 주 문

- 결산검사위원수 : 의원 3인
-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
※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 125 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

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 46 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당해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, 그 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

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 47 조(결산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마포구 조례

제 3 조(선임방법) ①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마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.